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1992. 3. 7
-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문교사회위원회
-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2월 10일
 - 회부일자 : 1992년 2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 76회 임시회
- 제 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 3. 5)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관리국장 김근학)

가. 제 안 이 유

현재 교육위원에게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4473호)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 요 골 자

- 교육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토록 함에 따라 근거법령 수정 (조례 제1조)
-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와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4473)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물론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4조(지방자치의 준용)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개정 조례안

나. 신.구문 대비표